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7-13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누7454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11. 27. 선고 2014구합52961 판결
변 론 종 결	2016. 6. 1.
판 결 선 고	2016. 6. 1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9. 14. 원고에게 한 취득세 21,362,560원 및 농어촌특별세 2,136,2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소장의 청구취지에 기재된 처분일자는 오기이므로 주문과 같이 바로잡는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7-13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중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다. 인정 사실'은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2면 4행부터 4면 2행까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2면 16행의 "2012. 9. 12."을 "2012. 9. 14."로 고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주식 명의신탁 여부

1) 갑 제1 내지 29, 33, 36 내지 38, 42 내지 5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제1심 법원의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1992. 3. 30. 이 사건 회사의 전 대표이사 J 등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할 당시 서류상 양수인이 아니었음에도 인수인 대표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학교 친구 D 명의 계좌를 통해 인수 계약금 5억 원 중 3억 원을 지급한 사실, 인수 절차 완료 후 이 사건 회사는 1992. 9. 30.자 주주명부에 H, G, L, E이 각 전체 주식의 25%인 7,500주씩을 보유한 것으로 등재한 사실, 그런데 E과 G은 같은 해 11. 19. 원고에게 자신들 명의 25%의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약정서(갑 제12, 13호증)를 작성하여 원고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사실(갑 제54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E이 자필로 갑 제13호증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그 무렵 G은 원고의 처남인 L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절차를 완료하였는데 L은 1994. 12. 3. 자신 명의 주식은 원고에게서 명의수탁한 것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7-13

실, H은 1993. 3. 5. 자신이 보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7,500주를 D에게 양도한 사실, 이 사건 회사는 1998년 12월경 새로 주권을 발행하였는데 L, E, D는 자신들 명의 주권의 양도인 배서란에 기명·날인을 하여 원고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사실, D는 이 사건 소 제기 전부터 자신은 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원고가 그 실질 주주임을 인정해왔던 사실, 원고가 2011년 10월경 E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통지하고 명의개서를 이행한 후 과세관청에 대한 신고까지 마쳤음에도 E이 그로부터 3년 동안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처럼 D가 스스로 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원고가 주권을 보관하고 있는 등 객관적 정황도 그에 부합하는 점, E도 자신 명의 주식에 대한 실질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그 주식을 취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에게 아무 대가 없이 주식 전부를 양도하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거나 D와 함께 주권에 배서하여 원고에게 인도할 이유가 전혀 없고, 오히려 이는 원고로 하여금 필요할 때 언제든지 주식을 회수해 갈 수 있도록 협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E과 D는 L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주주가 아니라 원고의 요청을 받고 그에게 명의를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지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원고가 2011. 9. 30. E, D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0%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였더라도 이는 명의신탁 관계를 종료한 것일 뿐 실제로 주식을 양수한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같은 날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여부

1)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실제 소유자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7-13

명의자에게 그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명의신탁자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부정하고 있으므로, 이후 명의신탁자가 주식 명의를 회복하는 것도 새로운 주식의 취득과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같은 법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고(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두4269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지방세법에는 이러한 의제규정이 없으므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취득한 자가 실질상 주주권을 행사하여 오다가 그 주식의 소유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한 행위는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에 따라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두10872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빈

판사 김경환

판사 정승규